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지침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1. 추진배경

인구증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대량생산·소비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패턴은 다양화·고급화되었고 이에 비례해 제품포장 또한 고급화·재질다양화·다량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95년도에는 제품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전체 생활쓰레기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점관리 대상분야로 부상되고 있다.

제품포장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포장재질 중 합성수지재질포장재는 중량기준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연평균 10.5% 증가)에 있다.

그러나 재활용실적은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합성수지재질포장쓰레기는 소각 처리시에도 유해가스발생 등 2차 환경오염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재질의 특성이 난분해성이면서 부피가 과대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매립장의 비효율적 사용 및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가 협소하면서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72% 이상을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넘비현상 등에 의한 매립장 확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처가 절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난분해성 포장재 쓰레기 발생억제의 일환으로 지난 96년 7월 25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 96-92호)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며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2. 지침의 주요내용

감량화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회수·재활용·처리하는 것이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용어의 정의(제2조)

▲“제조·수입자”라 함은 제품을 제조·구매 또는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자(주문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문한 자를 말하며,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임

▲“감량화”라 함은 감량·회수·재활용·처리의 총칭임

▲“감량”이라 함은 대상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수량·중량 또는 부피를 줄이는 것임

▲“회수”라 함은 제조·수입자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이 발생된 장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을 수거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이를 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행위임

▲“재활용”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생연료화·열이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

▲“처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감량·재활용·매립 외의 방법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분하는 것임

▲“대상포장재”라 함은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공식적인 규격기준이 있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은 제외한다)의 포장재임

2-2. 주체별 책무사항(제3조, 제5-8조)

2-2-1. 제조·수입자(포장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

▲감량화목표를 이행방법의 통지

- 직접 또는 위탁(공동) 재활용,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포장재 사용방법 중 선택하여 1997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

▲감량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의 기록 보존

- 매년 2월말까지 자체 감량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①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별 판매현황 ②생산제품명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③감량

화목표율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감량 또는 회수·재활용·처리)이 포함되어야 하며

- 감량화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그 증빙서류를 3년간 보존

2-2-2. 시장·군수·구청장

▲제조·수입자가 감량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협조(제3조 제2항)

2-2-3. 시·도지사

▲관할지역내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침 이행실태지도 감독

2-2-4. 환경부장관

▲관련단체(한국식품공업협회 등 10개단체)를 통하여 제조·수입자의 감량화계획 수립 및 그 추진실적 등 감량화목표율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

2-3. 대상포장 및 감량화 목표율(제4조)

2-3-1. 대상포장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한 별표에서 정하는 식품류·제과류·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완구·인형류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

- 대상포장의 범위를 연차별로 확대

· 2001년까지는 대상제품 중 난좌, 컵라면용기, 받침접시류로 한정하고

· SA·2002년부터는 대상제품의 모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료 확대

2-3-2. 이행 목표율 산정기준

▲목표년도 : 1998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2-4.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제9~10조)

2-4-1. 재활용방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자는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재활용단체를 알 수 있고·개별적인 재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회수·재활용토록 유인함으로써 합성수지재질포장쓰레기 재활용 촉진

2-4-2. 구성된 공동재활용단체는 관련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대상포장재의 재활용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체의 대표

▲목적 및 사업범위

▲소요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대상제품 제조자 등의 60% 이상 참여 약정서 및 기타 관련사업자단체 등의 참여 약정서

2-4-3.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단체 지정시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침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과는 별도로 회수·재활용목표율을 부여할 수 있다.

2-4-4. 지정된 재활용단체가 별도로 부여된 회수·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였을 경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한 것이며 제 6조(감량화 계획의 수립 등)과 제 7조(감량화실적 등의 기록보존의 이행 면제

2-5. 재활용단체의 업무(제 11조~13조)

2-5-1. 재활용단체의 대표는 재활용단체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과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약정 체결

▲회수약정사항

-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
-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물량
- 회수약정을 위반한 때의 조치사항
- 기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정 체결 사항을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내용을 공고

2-5-2.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환경부장관이 부여한 회수·재활용·처리 목표율을 반영한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 재활용실적 산정은 대상포장재 및 대상제품의 구분없이 합성수지재질의 포장폐기물의 재활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참여하고 있는 제조·수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현황

▲기타 회수·재활용·처리체계 운영 관련사항

2-6. 재활용단체의 사업촉진(제14조)

2-6-1. 환경부장관은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사업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

2-6-2. 재활용단체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에 재활용 단체에 참여하였음을 표시하는 고유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단, 감량화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 ☐